



수 신 회원사 대표

참 조

제 목 2026년 추석 명절 대비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 설치·운영 안내

1.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6. 8. 5 ~ 2026. 9. 23 기간 동안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*」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*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: 051-460-1041 ~ 8(FAX 051-460-1004)

□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주요 사례

- 가.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
- 나. 하도급대금을 장기(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)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,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다.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(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)하는 행위
- 라.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,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 기간(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)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

붙임 : 1. 권역별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 설치 현황 1부

2.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



담당자 제도개선실 주임 이유신 대리 이희승 과장 이정훈 실장 김우배
시행 전건협 경남 제547호 (2026. 8. 5)
우5139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0(전문건설회관 2층)
전화 055-288-8117 전송 055-238-1733 / 전자우편 shin2025@kosca.or.kr